

	입학전형회피·제척제도운영에 관한 규정	규정번호	3-4-24
		제정일자	2020.09.01.
		개정일자	-
		개정차수	-
		소관부서	교무입학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입학전형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피·제척에 대한 기본 원칙과 운영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‘입학전형’이란 고등교육법 제34조의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을 말한다.
2. ‘입학전형 업무 참여자’란 입학사정관(위촉사정관 포함)을 포함하여 실기 및 면접고사, 대학 입학사정 업무관련자 등을 말한다.
3. ‘회피’란 대학이 타 기관 또는 대학의 입학 관련 업무와 어떤 특수한 관계, 이해관계가 있어 불공정한 운영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인사를 배제시키는 것을 말한다.
4. ‘제척’이란 대학의 입학 관련 업무를 불공정하게 운영 또는 취급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인사를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.
5. ‘응시생과 특수한 관계’란 「고등교육법」 제34조의2 및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31조의2와 본 규정 제3조에서 정하는 응시생과의 관계를 말한다.

제3조(대상) ① 대학 입학전형 회피 및 제척 대상 적용 범위는 출제, 평가, 감독, 관리 등에 관여하는 입학전형 업무 참여자로 한다.

② 회피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입학전형 업무 참여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(「민법」 제777조)인 경우
2.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생을 그 학생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 교습한 경우
3.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생을 그 학생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「고등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
4. 그 밖에 입학전형 업무 참여자의 지인(학연, 지연, 종교, 직연 등 친분관계) 중에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지원한 경우

③ 제척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입학전형 업무 참여자 본인 및 배우자가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(「민법」 제777조)인 경우

2. 회피 자진신고를 받은 내용 중 사회통념상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4조(운영방법 및 시기) 회피·제척은 자진신고(회피), 시스템 검증(제척), 재검증, 사후검증의 절차로 이루어지며, 운영방법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자진신고(회피) : 교무입학처는 입학전형 업무 참여자를 대상으로 입학전형이 실시되기 전, 원서접수 후 평가전, 평가진행 중 자진신고(회피) 사항을 안내하고,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입학전형 업무참여자는 자진신고 서류(신고서 등)를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2. 시스템 검증(제척) : 교무입학처는 원서접수 이후 연말정산자료, 인사현황자료, 가족장학사항 등을 종합하여 입학전형 업무 참여자와 응시생과의 관련여부를 확인하여 입학전형 업무에

서 배제할 수 있다.

3. 재검증 : 교무입학처는 회피·제척 관련 자료를 비교 검토하고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입학전형 업무 참여자가 확정되기 이전에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선발 업무에 참여하는 자가 있는지 검증하여야 한다.

4. 사후검증 : 해당 연도의 모든 입학전형 종료 후 합격자를 대상으로 자녀 장학금 및 부양가족 수당 신청내역 조회, 「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」 감사 등을 통해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5조(처리 관리) ① 교무입학처는 회피·제척과 관련된 처리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입학전형 실시 이전에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교무입학처는 매 학년도의 회피·제척 운영 결과를 자체 보관·관리하여 입학전형 관리의 공정성이 검증될 수 있도록 한다.

제6조(위반자 조치) 입학전형관리위원장은 교직원이 지원자의 합격에 부정하게 기여하거나 또는 회피·제척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저해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,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자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7조(기타사항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·결정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